

의안번호	제 21 호
의결년월일	1998. . .

의결사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예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8. 7 20 .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
----------	----

제출일자 : 1998. 7. 20.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깨진유리, 나무조각,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해 폴리에틸렌(P E)재질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폴리프로필렌(P P)마대를 제작·공급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함.

2. 주요골자

- 가. 대형폐기물의 종류중 쓰레기봉투 사용불가능 배출폐기물을 삭제(안 제2조제4호)
- 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마대를 제작·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토록함(안 제2조제9호)
- 다. 쓰레기봉투 종류에 마대봉투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
- 라. 마대봉투의 크기, 재질을 정함(안 제9조제2항·제3항)
- 마. 마대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을 정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3.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98. 4. 8 - 4. 27(20일간)
- 나. 예고방법 : 신문공고
- 가. 접수된 의견 : 없음

사천시 폐기물관리예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관리예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과 쓰레기봉투 사용불가능 생활 폐기물로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마대봉투라함은 시장이 제작한 마대(이하 “마대”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규격봉투 사용아 불가능한 깨진유리, 나무조각,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1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2항중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규격봉투사용불가능 생활폐기물은 마대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배출자는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연탄재 다음에 “마대봉투”를 삽입한다.

제9조제1항중 대형업체 수거용 봉투와 다음에 “마대봉투 및”을 삽입한다.

제9조제2항중 “쓰레기봉투의 크기”를 “쓰레기봉투, 마대봉투의 크기”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P E) 종류로 마대봉투는 폴리프

로필렌(P P)로 하고, 시청소차 수거용봉투 색깔은 반투명으로 하되 유백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마대봉투는 녹색으로, 대형업체 수거용봉투 색깔은 옅은 노랑색으로 하되 대형업체별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목중 “쓰레기봉투의 제작”을 “쓰레기봉투 및 마대봉투의 제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 및 마대봉투”로 한다.

제16조제1호중 “별표 4와”를 “별표 4. 마대봉투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7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내지 제3호(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내지 제3호(현행과 같음)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사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 기봉투”라고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 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 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과 쓰레기봉투사용불가능 생활폐 기물로서 마대를 사용하여 배 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5호 내지 제8호(생략) (신설)	4. 시장이 고시하 는 품목을 말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	제1항(생략)	제5호 내지 제8호(현행과 같음)	9. 마대봉투라 함은 시장이 제작 한 마대(이하 “마대”라고 한 다)를 사용하여 규격봉투사용 이 불가능한 깨진유리, 나무 조각, 이사, 짐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1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 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생략)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 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	제1항(현행과 같음)
제3항(생략)	④ 시장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사업장생 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 활용품과 폐전전지등의 수집·운 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하여 각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 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하며, 규격봉투사용불가능 생활폐기물은 마대봉투를 사용 하여 배출하고, 배출자는 시장에 게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현행과 같음)
		④ 연탄재, 마대봉투,	

현행	개정(안)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시청소차 수거용봉투와 <u>대행업체 수거용봉투</u>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u>대행업체 수거용봉투</u>는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내로 제한하며 배출쓰레기는 종류별 및 용도별 봉투에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u>시청소차 수거용봉투</u>색깔은 반투명으로하되 유백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을 "<u>대행업체 수거용봉투</u>"색깔은 엷은 노랑색으로하되 <u>대행업체별 구분표시</u>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제2항내지 제4항(생략)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생략)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수수료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은 <u>별표 4와 같다.</u>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의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u>대행업체 수거용봉투와 마대봉투 및</u> ②<u>쓰레기봉투, 마대봉투의 크기</u>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PE) 종류로 <u>마대봉투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하고, 시청소차 수거용봉투 색깔은 반투명으로 하되 유백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마대봉투는 녹색으로, 대행업체 수거용봉투 색깔은 엷은 노랑색으로 하되 대행업체별 구분표시</u>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마대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 및 마대봉투 제2항내지 제4항(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현행과 같음) 1. <u>별표 4. 마대봉투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7과</u>.....

[별표 1]

쓰레기봉투및마대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종류(리터)	규격 (가로×세로×두께)	용도
5	26 × 46.5 × 0.02	시청소차 수거용봉투 : 유백색 공공용 봉투 : 옅은 청색 대행업체 수거용봉투 : 옅은 노랑색
10	33 × 56.5 × 0.02	
20	42 × 69.5 × 0.025	
50	56 × 91.5 × 0.035	
100	71 × 113.5 × 0.045	
50(PP마대)	56 × 91.5	마대봉투 : 녹색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표시의 평봉투는 굽은 선, 절취형 봉투는 평봉투형으로 하 되,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 반 올림 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별표 5]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징수기준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3,000	
에 어 컨	264m ³ 형 이상	8,000	
	66m ³ 형 이상	5,000	
	66m ³ 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 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농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서 략 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신 발 장	모든 규격	2,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장 식 장	모든 규격	4,000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응 접 세 트	장 의 자	5,000	
	의 자	2,000	
침 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캐 비 넷	모든 규격	4,000	
화일 캐비넷	4단 이상	3,000	
	3단 이상	2,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피 아 노	이프라이트	10,000	
	그 랜 드	15,000	
오 르 간	모든 규격	4,000	

(주)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표 7]

마 대 봉 투 공 급 관 매 가 격
(시청소차 수거용)

(단위 : 매/원)

종 류	공 급 액			관 매	관 매 액
	계	수집운반 및 처리비	봉 투 제 작 비	수 수 료	
50리터 (PP마대)	920	722	198	80	1,000

현행

[별표 1]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종류(리터)	규격(cm) (가로×세로×두께)	용도
5	26 × 46.5 × 0.02	시청소차 수거용봉투 : 유백색
10	33 × 56.5 × 0.02	공공용 봉투 : 옅은 청색
20	42 × 69.5 × 0.025	
50	56 × 91.5 × 0.035	대행업체 수거용봉투 : 옅은 노랑색
100	71 × 113.5 × 0.045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표시의 평봉투는 굽은 선, 절취형 봉투는 평봉투형으로 하되,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 반올림 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현행

[별표 5]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징수기준

(단위 : 원)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3,000	
에어컨	264m ³ 형 이상	8,000	
	66m ³ 형 이상	5,000	
	66m ³ 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농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서랍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문갑	모든 규격	3,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응 접 세 트	장 의 자 의 자	5,000 2,000	
침 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캐 비 넷	모든 규격	4,000	
파일 캐비넷	4단 이상 3단 이상	3,000 2,000	
책 상	양수, 대형 판수, 소형	5,000 4,000	
피 아 노	이프라이트 그 랜 드	10,000 15,000	
오 르 간	모든 규격	4,000	
규격봉투 사용불가 능 1Kg이상 배출 일반폐기물(깨진유 리, 스티로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 으로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일반폐기 물)	40Kg입 마대당	1,000	

(주)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